



공중인가
법무법인 비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

[별지 제33호서식]

(전화) 02-6743-7001

등부 2022년 제 29246호

인 증 서

발 기 인 총 회 의 사 록

2022 년 7 월 26 일 10시30분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식회사 창립 사무소에서 발기인총회를 개최하다.

주식총수	300,000주	발기인총수	1명
이주식수	300,000주	출석발기인수	1명

발기인 대표 주식회사제일엠앤이 는 발기인이 상법 제363조 소정절차의 단축 또는 생략에 동의하였 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발기인이 출석하여 본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 음을 알리고 회의 진행상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바 발기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발기인 대표를 의장으로 선임하였고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 1 호 의안 : 정관 승인의 건



발기인은 본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회사의 운영규범이 되는 정관을 정하고 정관 말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

제 2 호 의안 : 주금 납입의 건

의장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에 대한 주금의 납입장소를 주식회사 우리은행 선릉금융센터으로 정하고 발기인들이 발기인총회 개최일자까지 인수주식에 대한 주금의 납입 완료하도록 정하였음을 설명한 바 전원일치로 이를 승인 가결하다.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이사의 선임방법을 물은바, 발기인 전원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키로 합의되어 이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사내이사 윤 양 수 (610919-

기타비상무이사 임 승 철 (701020-)
기타비상무이사 나 기 원 (470516-)

제 4 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감사의 선임방법을 물은바, 발기인 전원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키로 합의되어 이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단,감사의 선임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감 사 정 승 욱 (731105-)

제 5 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정관 제32조에 의하여 발기인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줄것을 구하여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가 선출되다.

대표이사 윤 양 수



서울 은평구 통일로610, 107동2002호(녹번동,힐스테이트녹번아파트)

제 6호 의안 :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 보고의 건

의장은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을 발기인이 아닌 이사 또는 감사가 조사보고케 하다. 잠시후 발기인이 아닌 이사 및 감사는 별지 보고서와 같이 보고한 즉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제 7 호 의안 : 본점 설치 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정관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예 둔다고만 정해져 있으므로 설치장소를 결정하자는 취지를 말한바 전원일치로 다음과 같이 본점 설치장소를 결정하다.

본 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4, 16층(서초동,삼성생명서초타워)

제 8 호 이사 보수 승인의 건

의장은 이사의 보수 건을 상정하고 결의에 임한바 이사의 보수는 무보수로 하기로 승인하다

제 8 호 감사 보수 승인의 건

의장은 감사의 보수 건을 상정하고 결의에 임한바 감사의 보수 월 500,000원으로 하기로 승인 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11시00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이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다.

2022 년 7 월 26 일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식회사

의장 발기인대표 제일엠앤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309, 16층(역삼동,삼성제일빌딩)

대표이사 정 정 식

사업자등록번호 220-88-09433

법인등록번호 110111-4490887



조 사 보 고 서

2022년 7월 26일 본 회사 발기인 총회에서 상법 제298조 소정의 회사설립사항의 조사보고자로 발기인인 아닌 이사 감사가 검사인으로 선임되었는바 이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조 사 사 항 및 조 사 결 과

1. 정관의 작성 및 효력발생요건의 충족여부.

본회사의 설립은 발기인이 결정되어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말미에 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정관의 효력발생 요건이 충족되었음.

동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사업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적법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되고, 기관의 구성, 각종회의의 소집과 의결방법, 정족수등 제반규정들이 정관 및 상법 기타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됨.

2. 주식발행사항의 적정여부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300,000주로서 이는 회사가 발행할 예정 주식의 총수 2,000,000,000주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타 주식의 발행 및 배정방법등이 정관 및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함이 인정됨.

3.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와 정확 여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300,000주로서 1주의 금액 금1,000원으로 하여 2022년 7월 26일자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였음.

4. 인수 주식수에 대한 납입의 정확여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총수 300,000주에 대한 주식금300,000,000원은 2022년 7월 26일로 납입이 완료되었음이 그납입을 맡은 주식회사 우리은행 선릉금융센터에서 발행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됨.

5. 현물출자의 이행의 정확여부와 이에 대한 검사인의 보고서와 정확여부.

회사설립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고 정관에 상법 제290조 소정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여 검사인등을 선임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정확여부는 조사항 필요가 없었음.

6. 기타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적정함이 인정됨.

위와 같이 조사 보고합니다.

2022 년 7 월 26 일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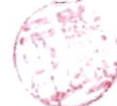
검사인 대표이사 윤 양 수



기타비상무이사 임 승 철



기타비상무이사 나 기 원



감 사 정 승 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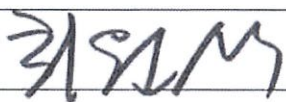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 전

[별지 제37호서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

(전화) 02-6743-7001

등부 2022 년	제 29246호
인 증	
위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의	
2022년 07월 26일자 발기인총회 -----	
의사록에 대하여 발기인 주식회사제일엠앤이 익 대리인 윤양수 는 -----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	
그 기명날인 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	
을 확인 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의 대리인이 제시한 자동차운전면허증 ----- 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2022년 07월 26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	
공증담당변호사	
아	래
1. 공증촉탁서, 2. 진술서, 3. 확인서, 4. 주주명부, -----	
5. 정관 -----	

